

2022년 이슈리포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시보기

[세번째 이야기]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타티나일



오늘의 이야기

채팅 어플로 만난 20대 남성 3명과 중학생 2명,
무인 모텔로 이동 후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를사를 밝혔지만 성폭행

피고인 A, B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준강간)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 B, C 모두 무죄 선고**

출처 : 뉴시스 (2021.11.23) “하지말라고 소리쳤는데도..” 여중생 준강간 20대 3명 무죄 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2_0001660470&clD=10817&pID=14000

오늘의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의 판결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번째

성인이 미성년자를 무인 모텔로 데려가고 술을 먹이는 행동?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른이라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아동·청소년이 재워 달라거나 술을 사달라고 한다면?

- 1) 내가 재워줄게~ 모텔이나 우리집으로 가자
- 2) 술 마시고 싶구나? 내가 사줄게 같이 한 잔 마시자
- 3) 원하는 걸 해줄테니 너도 내가 원하는거 해줄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첫번째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재워주거나 술을 사준다면
원하는 걸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어른인가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

어른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번째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

D양 등이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o Means No 

심신상실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멈춰야합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의 시각

1



ECPAT 인도네시아 / 필리핀



어른이 알코올을 이용하여 아동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동보호법에 위반된다.
음주로 인해 아동이 의식을 전부 잃지 않더라도 알코올로 인해 약해진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미국 (워싱턴D.C 법)

만 16세 이하 아동의 동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식이 없거나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동의를 내릴 능력이 부재한 경우 또한 제외한다.

가해자가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건네 준
약물, 술 등에 중독되어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었을 경우, 동의할 수 없어 강간으로 정의한다.

시선 바꾸기

1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상)

어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

기억해요 No Means No!

싫다고 거부하면 행동을 멈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돼요.

3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요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고
성관계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 봐주세요.

2022년 이슈리포트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타티나일